

## 【 4 】 양주시 참전유공자 지원에 관한 조례안

발의연월일 : 2008. 10.

발 의 자 : 홍범표 의원

외 6인

### □ 제정이유

참전유공자에 대하여 지원을 함으로써 참전유공자의 명예를 기리고 복리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함

### □ 주요골자

#### 가. 조례의 목적(안제1조)

「참전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에 따른 참전유공자에 대하여 지원을 함으로써 참전유공자의 명예를 기리고 복리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

#### 나. 지원대상(안제2조)

참전유공자로서 지급일 기준 현재 양주시에 1년 이상 주소를 둔 65세 이상인 유공자

#### 다. 지원사업(안제3조)

1. 유공자에게 참전명예수당 월 3만원 지급
2. 유공자 사망시 사망위로금 15만원 지급
3. 유공자와 관련된 각종 기념일에 공익활동 유공자에 대한 표창 등

□ 제정조례안 : 별첨1

□ 관련법령 발췌: 별첨2

- 참전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

□ 예산수반사항 : 379,500,000원

- 참전명예수당 :  $30,000\text{원} \times 1,050\text{명} \times 12\text{월} = 378,000,000\text{원}$
- 사망위로금 :  $150,000\text{원} \times 10\text{명} = 1,500,000\text{원}$

□ 사전입법예고 : 해당없음

□ 기타 참고사항 : 해당없음

## 양주시 참전유공자 지원에 관한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참전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에 따른 참전유공자에 대하여 지원을 함으로써 참전유공자의 명예를 기리고 참전유공자의 복리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지원대상)** 이 조례에 따른 지원대상은 「참전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참전유공자(이하 “유공자”라 한다)로서 지급일 기준 현재 양주시에 1년 이상 주소를 둔 65세 이상인 유공자로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유공자는 지원에서 제외한다.

1. 지방보훈청에서 「참전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 제3조제2항에 따른 부적격자로 통보된 사람
2. 「국가유공자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제4호·제6호·제7호·제9호에 해당하는 자로서, 같은 법 제11조에 따른 보훈급여금을 받는 사람

**제3조(지원사업)** 양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유공자에게 예산의 범위안에서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업을 실시할 수 있다.

1. 유공자에게 참전명예수당 월 3만원 지급
2. 유공자 사망시 사망위로금 15만원 지급
3. 유공자와 관련된 각종 기념일에 공익활동 유공자에 대한 표창
4. 유공자의 호국정신을 승계하기 위한 사업
5. 그 밖에 유공자의 복리를 증진하기 위한 사업

**제4조(지급방법 및 시기)** ① 최초로 참전명예수당을 지급받고자 하는 유공자와 거주지 변동 등으로 재신청 하는 유공자는 별지 제1호서식

에 따른 신청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사망위로금은 유공자가 사망한 날부터 1년 이내에 유가족 또는 관계인이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 신청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참전명예수당은 분기별로 지급하되, 매 분기 마지막 달 20일에 지급받을 권리가 있는 유공자가 지정한 예금계좌에 입금하는 방법으로 지급한다.

④ 참전명예수당은 신청한 날이 속하는 달부터 지급중단 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달까지 지급한다.

⑤ 사망위로금은 제3항을 준용하여 지급한다.

**제5조(지급대상자의 결정)** ① 시장은 제4조제1항에 따른 참전명예수당 신청자에 대하여 지방보훈청과 관련 단체에 제2조에 따른 지원대상 확인을 위한 조회를 실시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지급신청서를 접수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제1항에 따른 조회 결과에 따라 지급대상 여부를 결정하고, 그 결과를 신청자와 관련 단체에 통지하여야 한다.

**제6조(지급중지의 결정)** 참전명예수당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급을 중지한다.

1. 사망한 자
2. 다른 시·군·구로 주소지를 옮긴 자
3. 지급부적격자로 판명된 자

**제8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 부 칙

이 조례는 2009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별지 제1호서식]

참전등록번호									처리기간 30일
참전유공자 명예수당 지급신청서									
신청인	성명				주민등록 번호	-			
	주소	우편번호 : □□□ - □□□			(☎)				
예금 계좌	금융기관명				예금종류				
	계좌 번호				예금주 성명				
<p>「양주시 참전유공자 지원에 관한 조례」 제4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참전명예수당의 지급을 신청합니다.</p>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p>양주시장 귀하</p>									
<p>※ 구비서류</p>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참전 유공자증 사본 1부</li> <li>예금통장(계좌번호가 표시된 면을 말합니다) 사본 1부.</li> </ol>									
수수료 없음									

[별지 제2호서식]

(별첨2)

## 참전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2008.3.28 법률 제9079호]

제1조 (목적) 이 법은 참전유공자가 국가에 공헌하고 헌신한데 대하여 응분의 예우와 지원을 함으로써 참전유공자의 명예를 선양하고 국민의 애국정신함양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2.1.26>

제2조 (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개정 2002.1.26, 2005.3.31, 2007.1.3>

1. "6·25전쟁"이라 함은 1950年 6월 25일부터 1953년 7월 27일까지 사이에 발생한 전투 및 1948年 8월 15일부터 1955년 6월 30일까지의 사이에 발생한 전투중 별표의 전투를 말한다.

2. "참전유공자"라 함은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다만, 6·25전쟁이나 1964년 7월 18일부터 1973년 3월 23일까지 월남전쟁에 참전중 범죄행위로 인하여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고 불명예스러운 제대를 하거나 파면된 사실이 있는 자를 제외한다.

가. 6·25전쟁에 참전하고 전역(퇴역 또는 면역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된 군인

나. 「병역법」 또는 「군인사법」에 의한 현역복무중 1964년 7월 18일부터 1973년 3월 23일까지 사이에 월남전쟁에 참전하고 전역된 군인

다. 6·25전쟁에 참전하고 퇴직한 경찰공무원

라. 6·25전쟁에 참전(병역의무 없이 참전한 소년지원병을 포함한다) 또는 월남전쟁에 참전한 사실이 있다고 국방부장관이 인정한 자

마. 경찰서장 등 경찰관서장의 지휘·통제를 받아 6·25전쟁에 참전한 사실이 있다고 경찰청장이 인정한 자

제3조 (적용대상 <개정 2002.1.26>) ①이 법의 적용대상자는 참전유공자로 한다. <신설 2002.1.26>

②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는 이 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개정 2002.1.26, 2007.1.3>

1. 「국가보안법」의 위반행위로 인하여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자

2. 대통령령이 정하는 죄를 범하여 금고 1년 이상의 실형의 선고를 받고 그 형이 확정된 자

3. 상습적으로 대통령령이 정하는 품위손상행위를 한 자

③국가보훈처장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이 법의 적용대상에서 제외된 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게 된 때에는 그의 뉘우친 정도가 현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한하여 제5조의 규정에 의한 등록신청을 다시 받아 등록여부를 결정하여 지원을 할 수 있다. <개정 2002.1.26>

1. 금고 이상의 실형의 선고를 받은 경우에는 그 집행이 종료(집행이 종료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되거나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3년이 경과한 때
  2. 제1호외의 경우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이 법의 적용이 제외된 날부터 2년이 경과한 때
- ④ 국가보훈처장은 제2항 또는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사실확인 등을 위하여 전과기록을 관리하는 기관에 범죄경력 등의 확인을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02.1.26>

**제4조 (국가등의 책무)**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참전유공자의 예우와 지원을 위하여 다음 각호의 사업을 행한다. <개정 2002.1.26>

1. 참전유공자의 명예를 선양하기 위한 사업
2. 참전유공자의 호국정신을 승계하기 위한 사업
3. 참전유공자의 복리를 증진하기 위한 사업
4. 6·25전쟁 참전국과의 우호증진을 위한 사업

#### **참전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 2008.1.22 대통령령 제20563호]

**제4조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사업범위)** 법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참전유공자의 예우 및 지원을 위하여 행하는 사업의 구체적인 범위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참전기념탑 및 참전기념비 등 조형물의 건립
2. 참전유공자의 명예를 선양하기 위하여 대통령이 수여하는 참전유공자증서의 교부
3. 참전유공자가 사망한 경우 영구용 태극기의 증정
4. 참전기념사업에 관한 교육 및 홍보와 이에 관한 간행물의 발간
5. 참전관련 연구 및 학술활동 등의 지원
6. 참전유공자의 명예선양 또는 호국정신을 계승하기 위한 참전기념사업을 추진하는 법인·단체 및 개인에 대한 지원
7. 6·25전쟁 참전국과의 우호증진을 위하여 국가보훈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8. 그 밖에 참전유공자의 명예선양 및 복리증진을 위한 사업

제5조 (등록 및 결정) ① 참전유공자로서 이 법의 적용을 받고자 하는 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국가보훈처장에게 등록을 신청하여야 한다. <개정 2002.1.26>

② 국가보훈처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등록신청을 받은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참전유공자로서 요건을 확인한 후 등록 여부를 결정한다. <개정 2002.1.26>

③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국가유공자로 등록된 자 또는 「고엽제후유의증 환자지원 등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고엽제후유의증환자로 등록된 자는 그 등록신청서류에 따라 이 법 제2조제2호 각목의 1의 요건에 해당되는 사실이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등록한 날에 이 법에 의한 참전유공자의 등록을 한 것으로 본다. <신설 2002.1.26, 2007.1.3>

④ 국가보훈처장은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한 국가유공자로 등록되거나 「고엽제후유의증 환자지원 등에 관한 법률」에 의한 고엽제후유의증환자로 등록되는 자에 대하여는 지체없이 이 법의 적용대상이 되는 참전유공자에 해당되는지의 여부를 확인하여 이에 해당되는 때에는 본인에게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참전유공자로 등록된 사실을 통지하여야 한다. <신설 2002.1.26, 2007.1.3>

제5조의2 (신상변동의 신고 등) ①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참전유공자로 등록된 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 본인이나 그 유족 또는 가족은 총리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지체없이 국가보훈처장에게 그 사실을 신고하여야 한다.

1. 사망한 때
2. 제3조제2항의 규정에 해당하게 된 때
3. 국적을 상실한 때
4. 1년 이상 계속하여 행방불명이 된 때
5. 제4호의 규정에 해당하던 자로서 그 사유가 소멸한 때
6. 성명·주소 또는 생년월일의 변동이 있는 때
7. 참전 그 밖의 군기록 등에 관한 변경이나 정정사실이 있는 때

② 국가보훈처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가 있는 때에는 지체없이

다음 각호중 필요한 조치를 하고, 신고인에게 그 내용 및 사유를 통지하여야 한다.

1. 등록취소
2. 미지급 참전명예수당의 지급 또는 지급된 참전명예수당의 환수
3. 그 밖에 총리령이 정하는 조치

[본조신설 2002.1.26]

제6조 (참전명예수당) ① 65세 이상의 참전유공자에 대하여는 참전의 명예를 기리기 위하여 참전명예수당을 지급한다. 다만, 수당지급대상자가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제4호·제6호·제7호·제9호에 해당하는 자로서, 동법 제11조의 규정에 의한 보훈급여금을 받거나 또는 「고엽제후유의증 환자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7조제7항의 규정에 의한 수당을 지급받는 때에는 본인이 택일하게 하여 지급한다. <개정 2003.5.29, 2006.3.3, 2007.1.3, 2008.3.28>

② 삭제 <2005.3.31>

③ 참전명예수당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참전명예수당 지급연령에 도달한 날이 속하는 달부터 제5조의2제1항제1호·제2호 및 제4호에 규정된 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달까지 지급한다. 다만, 참전명예수당 지급연령이 경과한 후에 제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등록신청을 한 때에는 등록신청을 한 날이 속하는 달부터 지급한다. <개정 2003.5.29, 2005.3.31>

④ 참전유공자가 국적을 상실한 경우에도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참전명예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신설 2003.5.29>

⑤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8조, 제19조 본문, 제75조 및 제76조의 규정은 미지급 참전명예수당의 지급·환수 등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개정 2007.1.3>

⑥ 참전명예수당은 월액으로 하며, 그 지급액·지급방법 그 밖의 지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전문개정 2002.1.26]

#### 참전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 2008.1.22 대통령령 제20563호]

제7조 (참전명예수당의 지급액) 법 제6조제1항 본문에 따른 참전명예수당의 지급금액은 월 8만원으로 한다. <개정 2004.1.17, 2006.1.13, 2008.1.22>

[적용 2006.1.1부터]

2008. 10 . .

수 신 : 양주시의회의장

## 제 목 : 양주시 참전유공자 지원에 관한 조례안 발의

1

위의 조례안을 지방자치법 제66조의 규정에 의하여  
붙임과 같이 발의합니다.

제작 : 양주시 참전유공자 지원에 관한 조례안 3부. 끝.

## 별 이 자 종 표 (인)

6 pro

( 찬성자 서명 첨첨 )

찬성자서명